



협약심사 기술정보
Technical Information on
Convention Audit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48
 Fax : +82-70-8799-8319
 E-mail: kr-dmlc@krs.co.kr
 Person in charge: Jeon Hun-sung

수신(Recipients): MLC 담당자

번호(No.) : 2019-01 날짜(Date) : 2019년 12월 02일

제 목(subject): 대한민국 국적선에 대한 해사노동적합 단기증서 발행건

해사노동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개선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해사노동 인증 검사기관인 한국선급과 아래와 같이 대행업무 범위를 변경하였기에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사실확인서 발행(유효기간 1개월) ⇒ 단기증서 발행(유효기간 3개월)**

1. 배경

- 1)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0조(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1항에 따라, 한국선급은 결함 없이 인증검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결함이 시정된 때에 1개월 기한의 사실확인서를 발행함.
- 2) 그러나, 외국 항만에서는 사실확인서가 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출항 정지 등의 선박 운항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2. 개선 방안

- 1) 해사노동인증검사(예:임시,최초,중간,갱신 등)가 결함 없이 완료되거나 확인된 결함이 시정된 때에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선급이 3개월 기한의 단기(Short term) 증서를 발행함.

3. 시행 일자 : 2019년 12월 10일 (단기증서 발행일 기준)

4. 비교

- 1)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에 대한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루어짐.
- 2)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행된 경우, 한국선급이 발행한 단기증서의 효력은 상실됨.

첨부: 대한민국 정부 공문

협약본부장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사노동 인증검사업무 대행협정 변경체결 알림

1. 관련문서

- 가. 우리부 선원정책과-2478('19.7.8)호와 선원정책과-4123('19.11.21)호
- 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14175('19.7.8)호
- 다. 한국선급 SSC6200-602-2019('19.7.8)호와 SSC6200-1109-19('19.11.22)호
- 라. 한국선주협회 해무 제19-130('19.7.8)호

2. 「선원법」 제14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검사 대행기관에서 인증검사를 받고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기까지 일정기간 소요로 인해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등 선박운항 지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불임과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에 해사노동적합 단기증서(유효기간 3개월)의 발급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행협정을 변경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인증검사 대행기관((사)한국선급)은 변경 체결된 해사노동인증 검사업무 대행협정서에 따른 인증검사 및 해사노동적합 단기증서 발급 업무대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해사노동인증 검사업무 대행협정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사)한국선급, (사)한국선주협회

주무관 **황인성** 행정사무관 대결 2019.11.22 과장 전결
강정희

협조자

시행 선원정책과-4162 (2019. 11. 22.)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5동 555호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44 팩스번호 044-200-5749 / rhoads80@korea.kr / 대국민 공개

" 클린오션(Clean Ocean),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 "